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쟁점

가. 피고 교육부장관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N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일 뿐 그 자체로 N대학교 총장이나 N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법률상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N대학교 총장이고, 원고들은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N대학교 총장이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결요지 - 교수의 원고 적격 인정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산학협력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대우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산학협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연구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미 지급받은 연구성과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박탈당하지 아니할 이익도 보호하고 있거나, 적어도 산학협력법이 산업교원의 대우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에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으로서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교육부장관의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등을 들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소속 교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이 스스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속 교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 대하여 명령한 불이익 조치의 상대방인 교원 으로서는 형식적으로는 피고 교육부장관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교원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교육부장관의 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물론 학교의 장이 피고 교육부장관의 명령에 대하여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그러한 소송절차에서 불이익한 조치의 상대방인 교원이 학교의 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의 권리구제 가부가 학교의 장의 소 제기 및 그 유지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만약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원으로서도 학교의 장이 현실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교의 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학교의 장 등'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소송 형태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에 대한 유효적절한 권리구제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행정소송, 이의신청, 소청심사,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